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핵심 시민권 보호 조치의 약화 및 주거 차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연방 정부 개정 예고에 뉴욕주가 반대한다고 발표

아홉 개의 뉴욕주 기관이 주택 및 도시 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개정 예고에 따른 불리 효과에 반대하는 공공 의견 제출

인권부(Department of Human Rights)는 뉴욕주법에 따라 불리 효과 주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지침 발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취약 및 소외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주택 보호를 해체하려는 연방정부에 시도에 반대하여 다수의 기관이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닫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개정 예고는 시행될 경우 제정되면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의 불리 효과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주택 차별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홉 개의 주정부 기관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차별로부터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주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뉴욕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어떤 종류에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필수적인 주거 보호조치를 해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번 반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예고는 부당한 법적 부담을 조성하고 법적 구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택 차별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는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의 불리 효과 기준 이행에 대한 개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이나 관항에서 발생하는 불리 효과 주장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또는 가족 상태에 따라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개정 예고(Proposed Rule)는 차별 청구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거의 모든 차별 증거를 요구하여,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을 포함한 곳에서 수년 동안 이러한 청구를 분석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다수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인의 정책 또는 관행 및 차별적 영향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예고(Proposed

Rule)는 부담스러운 의무 규정을 설정하여, 합법적인 차별 주장을 약화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정 예고에 반대하고 규칙이 제정 될 경우, 뉴욕에 미칠 엄청난 효과를 강조하는 공공 의견을 제출한 뉴욕주 기관 아홉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부서(Division of Human Rights)
-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 가정폭력방지국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PDV)
-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오늘 제출한 의견 외에도 뉴욕주 인권 부서(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는 뉴욕주 법률에 따른 불리 효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발행하고 연방 표준에 대한 변경은 뉴욕주에서 이러한 주장을 분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Angela Fernand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정 예고(Proposed Rule)는 주택 차별의 피해자가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의무 사항을 설정합니다. 불리 효과 기준은 악의적이고 인식하기 어려운 차별을 식별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뉴욕은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과 뉴욕주 최고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이 이러한 차별에 맞서기 위해 제정한 기준에 계속 따를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이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예고가 시행된다면, 모든 뉴욕 주민, 특히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파괴될 것입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의 최근 제안은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해체할 것입니다. 워싱턴이 오랫동안 확립된 안전 장치를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금융 서비스부(DFS)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는 다시 한 번 연방 정부의 차별과 유해한 정책에 맞서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정 예고는 뉴욕 전역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개발하려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이니셔티브를 훼손하는 한편, 인종적 및 경제적 분리와 싸우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장애 또는 가족 지위에 관계없이 원하는 마을과 주택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정 예고(Proposed Rule)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주택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려 할 때 그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연령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공동체의 번영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선도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다면, 노인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나이를 먹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의 Shannon Cantiello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가정 폭력 대응 및 예방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가정폭력방지국(OPDV)은 개정 예고(Proposed Rule)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개정 예고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개정 예고(Proposed Rule)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위에 따라 차별 청구 능력과 구제책을 제한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유해한 관행에 취약한 상태로 놓이게 되며, 이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직면한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Jim McDonough, J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봉사한다는 지속적인 사명을 고려할 때,,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개정 예고는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모두 성공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없도록 막는 규정은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돌보겠다고 한 우리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개정 예고에 반대합니다."

아동 및 가정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번거로운 규정은 뉴욕주의 가정에게 치명적이며, 주택 차별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고 아동 복지 시스템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고 그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개정은 뉴욕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인구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rump 행정부의 불필요한 제안에 따라 가족들은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 극복할 수없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요 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들은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된 노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개정에 굳건하게 반대하는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지사와 함께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조치를 공격하려는 세력을 막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